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2016년 일본의 세금제도 개정안

I. 시작하며

일본의 아베총리는 2015년 9월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기회를 보장받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억총활약 사회’를 만들 것을 표명했다. 이것은 ‘희망을 만들어 내는 강한 경제’를 확립해서 ‘꿈을 만들어 내는 육아지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구축한다는 ‘신(新)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에 의해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걸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¹⁾로 이룬 약 3년간의 경제정책을 한 층 더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개정안은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 실시의 일환인 ‘소비세의 경감세율제도 도입’과 희망을 만들어 내는 강한

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인세개혁’의 2가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정안의 개요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비세의 경감세율제도

(1) 도입경위

2012년 6월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 근거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의 틀 아래, 같은 해 8월 세제발전개혁법²⁾이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 제7조 1호에서 소비과세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를 배려한다

* 본 자료는 渡邊将史, “軽減税率制度を始めとする税制改革の諸課題”, 立法と調査 No. 374, 일본 참의원사무국 기획조정실편집·발행, 2016. 2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1) 세 개의 화살(三本の矢)이란 아베총리가 내건 경제 정책의 총칭으로 과감한 금융 완화, 재정 지출의 확대,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이 주된 내용임.

2) 정식명칭은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발전적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 등의 법률」이다.

는 측면에서 ① 총합합산제도³⁾, ② 급부세액공제⁴⁾, ③ 복수세율의 도입 대해서 종합적으로 되었다.

정권교체를 거쳐서 여당이 된 자민당 및 공명당은 이때부터 여당세제협의회에 조사위원회와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경감세율의 도입을 목표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여당에서의 검토단계에서는 대상품목의 구분, 필요한 재원의 확보, 제도도입시기 등에 대해서 다양한 과제와 여당 내에서의 의견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재무성으로부터 여당에 대해서 개인번호카드⁵⁾를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소비세상당액의 일부를 환급하자는 ‘일본형경감세율제도안’이 제시되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당 안은 철회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 내에서의 논의가 일치되지 못하던 중에 이번에 아베총리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아베총리는 2015년 10월 14일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해 소비세율이 10%

인상되는 2017년 4월부터를 출발점으로 지시했으며, 여당은 10월 27일 재원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던 ‘총합합산제도’를 유보함으로써 4,000억 엔을 충당하는 것에 합의했다.

대상품목의 구분에 대해서 자민당이 대상품목의 범위를 좁히려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 공명당은 국민이 세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하자는 목적에서 대상범위를 폭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난항을 거듭한 후에 12월 12일 대상품목을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으로 하는 경감세율제도의 전체적인 틀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12월 16일 ‘여당세제개정대강’이 정식으로 내각에서 결정되기에 이른다.

(2) 경감세율제도의 개요

1) 대상품목

경감세율제도의 대상품목은 음료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과 신문(정기구독료)이다. 여기에서 ‘외식’이란 식품위생법 상의

3) 총합합산제도란 “저소득자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도단위가 아닌 가계전체를 총액으로 파악해서 의료, 간호, 보육, 장애에 관한 자기부담의 합계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4)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해당한다.

5) My Number제도에 따라 발급되는 카드로 동 제도는 국민각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과 납세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12자리의 ‘공통번호(My Number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2013년 제정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2016년부터 해당 번호의 이용이 시작된다.

음식점영업 및 그 외 장소에서 음식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식사의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테이블, 의자 그 외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음식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제공' 과 그 외 이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거나 편의점의 도시락 등은 외식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서울

경감세율은 8%(국가: 6.24% / 지방: 1.76%)이며 표준세율은 10%(국가: 7.8% / 지방: 2.2%)로 하고 있다.

3) 인보이스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의 도입(2021년 4월부터)

경감세율이 도입되고 있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2021년 4월부터 인보이스제도가 도입된다. 등록을 마친 과세사업자(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적격청구서의 교부·사본의 보존을 의무로 하며,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했다. 적격청구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현행의 ① 청구서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일시, ③ 거래내용, ④ 가격, ⑤ 청구서수령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더해서 ① 경감세율 대상품목이라는 기재, ② 세율별로 합산한 가격, ③ 등록번호, ④ 소비세율의 4가지

가 추가되었다.

또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청구서 등 및 장부의 보존을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한다.

동 청구서는 과세사업자만 교부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인보이스제도 도입 전의 경과조치 (2017년 4월 ~ 2021년 3월)

현행의 '청구서 등 보존방식'은 소비세율이 5%로 인상된 1997년 4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 방식에서는 장부의 보존과 거래 상대방(제3자)가 발행한 청구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보존을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청구서 등과 장부의 보존이라는 일본의 거래관행과 구분경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감사율제도가 도입되는 2017년 4월부터 인보이스제도 도입까지의 4년간 '구분기재청구서 등 보존방식'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가 발행하는 청구서 등의 기재사항에 ① 경감세율의 대상품목이라는 기재, ② 세율별로 합산한 가격이 추가된다. 동 청구서 등은 면세사업자도 교부 가능하며, 현행대로 판매자에게는 동 청구서의 교부·사본의 보존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의 벌칙도 적용하

지 않는다.

또한 구매자는 청구서 보존을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

5) 인보이스제도 도입 후의 경과조치 (2021년 3월 ~ 2027년 3월)

인보이스제도에서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의 면세사업자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입 후에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면세사업자가 거래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 인보이스제도가 도입되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3년간은 80%, 그 후 2027년 3월까지의 3년간은 50%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6) 안정적 재원의 확보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재정건전화목표를 지키며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개혁’의 원점에 서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세제개혁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① 2016년도 말까지 세입 및 세출에서 법

제상의 조치를 강구하여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한다.

② 2018년도의 ‘경제·재정재생계획’의 중간평가 등에 입각해서 세제의 구조개혁과 사회보장제도개혁 등의 세입·세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경감세율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용을 위한 검증·대응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운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일체가 되어 만전의 준비를 진행하며, 2016년도 세제개정법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① 정부·여당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며,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을 검증해서 필요에 따라서 경감세율제도의 원활한 도입·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경감세율제도도입 후 3년 이내를 목표로 인보이스제도 도입에 관련한 사업자의 준비상황 및 사업자거래에 대한 영향의 가능성, 경감세율제도 도입에 따른 간이과세제도의 영향, 경과조치의 적용상황 등을 검증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과에 근거해서 법제상의 조치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표 1〉 경감세율제도(안)의 개요

대상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료품(주류 및 외식 제외) 신문(정기구독계약이 체결되고 주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감세율 8%(국가: 6.24% / 지방: 1.76%) 표준세율 10%(국가: 7.8% / 지방: 2.2%)
인보이스제도의 도입 (2021년 4월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을 마친 과세사업자(판매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요구 있는 경우, 적격청구서의 교부·사본의 보전을 의무로 함(과세사업자만 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청구서 등 및 장부의 보존을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함(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불가)
인보이스제도 도입 전의 경과조치 (2017년 4월 ~ 2021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의 '청구서 등 보존방식'을 유지하면서 '구분기재청구서 등 보존방식'이 도입됨
인보이스제도 도입 후의 경과조치 (2021년 3월 ~ 2027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해서 인보이스제도가 도입되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3년간은 80%, 그 후 2027년 3월까지의 3년간은 50%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

2. 법인과세

아베내각은 디스플레이션탈출과 경제재생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해서 세제면에서는 2015년도에 법인세개혁에 착수했다. 이 법인세개혁은 법인과세를 보다 폭넓게 부담을 나누는 구조로 개혁해서 사업능력이 있는 기업 등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기업에 대해서 수익력 확대를 위한 투자확대, 적극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체질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2015년 세제개정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각국이 해왔던 “과세기준을 확대하면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정책에 따라 법인실효세율(2014년도 34.62%)의 20%대로의 인하를 목표로 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2016년도에도 이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세 과세기준의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에 법인세율을 더욱 인하하는 등, 법인실효세율의 20%대로의 인하가 실현될 것이다.

(1)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이번 개정에서는 회계기준의 확대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후에 법인세율 및 법인사업세소득 대비 세율을 더욱 인하하고 있다. 이로써 법인실효세율은 2016년도 29.97%, 2018년도 29.74%까지 인하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대’를 개혁 2년차에 실현하게 된다.

〈표 2〉 법인실효세율 인하(2016년도 개정)

	2014년도	2015년도	2016·17년도	2018년도
법인세율	25.5%	23.9%	23.4%	23.2%
법인사업세소득비율 (표준세율)	7.2%	6.0%	3.6%	3.6%
국·지방의 법인실효세율	34.62%	32.11%	29.97%	29.74%
2014년 대비		▲ 2.51%	▲ 4.65%	▲ 4.88%

(2) 조세특별조치의 재검토

조세특별조치에 대해서는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효한 정책수단인 한편, 세부담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정해서 적용시키기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2016년 3월말에 끝나는 감수조치 17항목 중, 3항목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14항목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4년도 개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촉진세제'에 대해서는 기한대로 2015년도 말에 축소하며, 기업의 투자판단을 앞당기도록 2016년도 말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감가상각의 재검토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로써 손금처리한 금액 중, 법인이 선택한 상각방법에 의해 법정내용연수에 따라서 계산한 상각한 도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상각방법에 대해서 건물은 '정액법', 기계장치 등은 '정액법'과 '정율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건물과 일체적으로 정비되는 '건물부속설비'와 건물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에 대해서 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통일된다.

(4) 결손금이월공제의 재검토(대법인)⁶⁾

2015년도 개정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

6) 대법인(大法人)이란 기말자본금액이 1억 엔을 넘는 법인을 말한다.

제제도가 과세기준을 크게 침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업능력을 높이는 인센티브로 하기 위해 결손금이월공제 공제한도의 단계적 인하 등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정에 의한 법인세개혁의 가속화로 인해 미치는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을 평준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5)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확대 (대법인)

이번 법인실효세율 인하에서는 2015년도 개정에 이어서 지방법인과세의 재검토도 이루어진다. 2015년도 개정에서는 기업이 사업능력을 높이는 인센티브가 되도록 대법인의 법인사업세 중, 외형표준과세(2014년도 ‘전체의 2/8’)를 2015년도 ‘전체의 3/8’, 2016년도 ‘전체의 4/8’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여 2016년도에 ‘전체의 5/8’로 더욱 확대하며 이에 따라 소득대비 세율은 2015년도 6.0%에서 2016년도 3.6%가 된다.

3. 개인소득과세·자산과세

(1) 스위치OTC(Over The Counter)의 약품⁷⁾공제의 신설(의료비공제의 특례)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는 셀프메디케이션을 추진하기 위해 스위치OTC의약품의 연간구입한도가 12,000엔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의 금액을 그 해 총소득금액에서 공제(한도는 88,000엔)할 수 있는 의료비공제의 특례가 신설된다. 본 특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의약품구입에 한정된다.

또한 적절한 건강관리 하에서 의료용의약품으로부터의 대체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건강의 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검진, 예방접종 등을 받는 개인이 된다.

(2) 통근수당의 비과세한도액 인상

지방발전의 추진에 관련한 세제상의 지원 조치의 하나로서 신칸센을 이용하여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통근하는 경우 등의 최근 실태를 파악하여 2016년 1월부터 통근수당의 비과세 상한이 10만 엔에서 15만 엔으로 인상된다.

7) 요(要)지도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료용의약품이 전용된 의약품을 말한다.

(3) 3세대 동거를 위한 주택리폼에 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출산·육아의 불안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간의 협력에 의한 육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3세대의 동거를 위한 주택리폼에 관해서 대출 등을 이용해서 리폼을 한 경우와 자기 자금으로 리폼을 한 경우,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다.

(4) 결혼·육아자금의 일괄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비과세조치의 확대

동 제도는 저출산대책을 위해 부모와 조부모의 자산을 조기에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젊은 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서 결혼·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15년도 개정에서 신설되었다. 이것은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 등의 명의의 계좌 등에 자금을 일괄해서 증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000만 엔까지 비과세로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결혼·육

아자금의 대상범위에 ‘불임치료비’가 추가된다.

4. 국제과세

(1) BEPS⁸⁾ 프로젝트 관련

2015년 G20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가 합의되고, 각 국에서는 관련 사항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활동·납세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국이 협조해서 정보수집 및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다국적기업정보의 보고 등에 관련한 제도’가 정비된다.

(2) 일본·대만 간 조세협정⁹⁾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

일본에게 있어 대만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중에서 최대의 직접 투자 상대국이다. 조세조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양 경제계가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대만관계에서 일본의 기본적 입장은 비

8) BEPS 프로젝트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G20 각국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일본은 2015년 개정에서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의 과세 및 외국 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의 재검토 등을 했다.

9) 원문은 ‘取決め(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편의상 ‘협정’으로 정리한다.

정부 간의 실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간의 국제적인 약속인 조세조약의 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세조약에 상당하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공익재단법인교류협회(일본)와 아동(亞東)관계협회(대만)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일·대만간 조세협정’¹⁰⁾이 정비된다.

5. 기타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신설

국세에 대해서 납부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본 개정은 납세자가 2017년 1월 4일 이후 신용카드회사에 국세납주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가산세제도의 재검토

현행 가산세율은 무신고 또는 가장·은폐가 있었던 횡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신고 등을 반복하는 자

에 대한 견제효과가 한정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에서는 악질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적법신고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신고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부과받은 자가 다시 무신고 또는 가장·은폐를 해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가산세를 10% 가중하는 조치가 도입된다.

Ⅲ. 이후의 과제

1. 소비세의 경감세율제도

(1) 대상품목의 지정

대상품목을 폭넓게 설정한 경우 소비자가 감세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소비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와 사회보장의 충실·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한편, 대상품목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렵고 세부담경감 효과가 낮게 된다.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에서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하고, 외식의 정의는 ‘식품위

10) 이 협정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감,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 등에 관한 일본과 대만 간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부터 협의가 지속되어 2015년 11월에 서명되었다. 조세조약에 상당하지만 일본에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

생법상의 음식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음식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제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감대상의 음식료품과 외식의 구분은 매우 어렵다.

비행기의 기내식과 도시락의 이동판매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는 사례가 1,200~1,300 분야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¹¹⁾ 그리고 완구가 들어있는 과자, 홍차와 다기세트 등, 음식료품과 음식료품 이외의 제품이 일체화된 상품에 대해서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속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경감세율의 대상이 된 신문과 같이 음식료품 이외의 품목 중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상품목 이외의 업계가 대상품목에 선정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갖는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재원문제

경감세율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주류 및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에서 연간 약 1조 200억엔, 신문에서 약 200억엔의 소비세 감수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10%단계에서의 사회보장 충실책의 하나로써 예정되어 있던 총합합산제도를 취소하고, 그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저소득자대책인 총합합산제도의 재원을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경감세율제도에 충당하는 것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합합산제도의 재원을 이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6,000억엔 정도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감세율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2016년 개정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저소득자 대책으로써의 효과

경감세율제도의 문제로서 세대연수입이 높은 만큼 부담경감액이 크다는 것은 분명

11) 産経新聞, 2016년 1월7일.

하며, 고소득자가 받는 혜택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성에 의하면 세대연수입이 200만엔 미만의 경우 연간부담경감액은 8,372엔인 것에 비해서 1,500만엔 이상의 경우에는 17,762엔으로 그 차이가 2배 이상이 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 세대의 소비세부담경감액은 합계 4,598엔으로 그 내역은 연수입 550만엔 미만인 세대가 약 50.1%, 550만엔 이상인 세대가 49.9%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담경감액에서 비교한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¹²⁾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4) 사무부담의 증가

경감세율도입에 따라서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무부담이 생겨난다. 상품관리를 중심으로 한 업무·실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품목선정결과가 요망되고 있으며, 경감세율에 따른 회계시스템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015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원 예산을 996억 엔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단체 등과 연계해서 경감세율제도의 홍보

와 상담 등을 각지에서 실시하기 위해 170억엔의 예산도 마련했다.

2. 법인과세

(1) 법인실효세율 인하의 효과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의 경쟁이 가속되고 있고, 일본이 법인세율 20%대로 인하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의견도 다수 있다.

그러나 재원이 없는 감세를 시행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재정상태와 기업의 내부유보금 증가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조세특별조치에 대해서는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의 실태가 명확하지 않고,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 경 석

(중앙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12) 日本総合研究所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pdf/8589.pdf>>.

참고문헌

渡邊将史, “輕減税率制度を始めとする税制改革の諸課題”, 立法と調査 No. 374, 일본 참의원사무국 기획조정실편
집·발행, 2016. 2.

日本総合研究所, <https://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pdf/8589.pdf>.